

(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)

1. 이용계약

-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"대상자 가족(보호자)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"(이하 '보호자'라 함)과 계약이 가능하다.
- ② 기관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 - 가) 기관은 대상자의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의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.
 - 나) 기관과 대상자(보호자)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"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(이하 '계약서'라 함)" 2부를 작성하고,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, 기관과 대상자(보호자)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 - 다)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"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"를 2부 작성하고, 날인하여 기관과 대상자(보호자)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. 계약기간

-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,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.
- ② 기관과 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.

3. 계약목적 - 기관과 대상자(보호자)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,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.

4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① 기관은 당해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1회 방문당 급여비용을 적용한다.
- ②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,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③ 기관은 산정된 급여비용에 각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대상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청구하여 지급받고, 나머지(공단부담금)을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.

구 분		금 액
월 한도액	1등급	2,512,900원
	2등급	2,331,200원
	3등급	1,528,200원
	4등급	1,409,700원
	5등급	1,208,900원
	인지지원등급	676,320원

구 분		(방문당) 금 액
방문요양	30분 이상	16,190원
	60분 이상	23,480원
	90분 이상	31,650원
	120분 이상	40,280원
	150분 이상	46,970원
	180분 이상	52,880원
	210분 이상	58,930원
	240분 이상	65,000원

5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① 권리

- 가)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
- 나)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다)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,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② 의무

- 가)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대상자에 관한 자료 제공의 의무
- 나)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
- 다) 대상자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라)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
6. 계약의 해제 -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고,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,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욕설, 폭행,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